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83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오기형·박홍배·차규근

김남근 · 김영환 · 진성준

박용갑 · 한창민 · 김남희

신장식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 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자는 이유로,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오너의 자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 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임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1항신설).
- 나. 국세청장 등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하거나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2항 신설).
- 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또는 이미 공시된 오류의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87조 신설).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업의 상호
-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성명
- 3.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짜
- 4. 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5.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는 지 여부
- 6.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인이 소유한 지분

- 7. 제5항제4호가목에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
- 8. 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총급여액
- 9.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제11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시 및 그 시정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제8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 제87조(과대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서 제18조의2제11항에 따른 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어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 |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
| | 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
| | <u>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매</u> |
| | 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 |
| | 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
| | 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
| | 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
| |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상속 |
| | 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 |
| | <u>지 아니하다.</u> |
| | <u>1. 가업의 상호</u> |
| |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
| | <u>의 성명</u> |
| | 3.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 |
| | 기 위한 서류를 제3항에 따라 |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
| | 출한 날짜 |
| | 4. 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 |
| |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 |
| | 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

<u><신</u>설>

- 5.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인이 가업에종사하는지 여부
- 6.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 도 말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소유한 지분
- 7. 제5항제4호가목에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 8. 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총급 여액
- 9.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제11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 은 상속인에 대하여 1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 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u><신 설></u> | ◎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
|---------------------|---------------------|
| | 공시 및 그 시정요구의 절차 |
| |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u><신 설></u> | <u>제8장 벌칙</u> |
| <u><신 설></u> | 제87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
| | 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
| | 인으로서 제18조의2제11항에 |
| | 따른 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 |
| | 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 |
| | 어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공 |
| | 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
| |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부과・징수한다. |
| <u> <신 설></u>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
| | 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